



결정문

사건번호: KR-1600139

신청인: 배병우(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김정은)

피신청인: 이지현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 이름

신청인: 배병우(Bae Bien-U)

경기도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담당변호사 김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38, 3층

피신청인: 이지현(Jihyun Lee)

서울특별시

분쟁 도메인 이름은 ".baebienu.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정보넷(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3 낙원프라자빌딩 7층
701호)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6. 3. 4.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6. 3. 7.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6. 3. 7.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6. 3. 7.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6. 3. 22.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6. 4. 12.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및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2016. 3. 24. 도달).

2016. 4. 12. 피신청인은 그 어떤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2016. 4. 27.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이덕재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같은 날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6. 4. 27.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2011년에 C20 한국 대표 예술가로 선정된 사진작가이다. 신청인은 1992년부터 30여년 동안 'Bae Bien U'를 자신의 성명의 영문표기로 사용해왔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현재까지 그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분쟁도메인 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개인의 웹하드로 연결될 뿐이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분쟁도메인 이름을 신청인에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Bae Bien U'는 신청인이 1990년대부터 예술분야, 특히 사진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사용해 온 신청인의 성명의 영문표기로서 세계적인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다.

2) 'Bae Bien U'는 신청인이 상거래에서 제작·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지로서 사용해 왔고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미등록 상표나 서비스표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분쟁도메인 이름 중에서 .com을 제외한 'baebienu'는 위 'Bae

Bien U'와 동일하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Bae Bien U'에 상응하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 · 서비스표와 분쟁도메인 이름의 유사

1) UDRP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신청인 상표나 서비스표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명도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한 상표나 서비스표에 준하여 UDRP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신청인은 1992년 11. 28. 출판된 사진집 "11월 한국사진의 수평전 아시아의 눈"에서 사진작가인 자신의 성명의 영문표기를 'Bae Bien U'로 사용한 이래로 지금까지 신청인의 사진과 관련된 사진집, 초대장, 팜플렛, 엽서, 포스터, 캘린더, 도서에는 물론 각종 도급계약서 등 일체의 문서와 직인에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주체로서 'Bae Bien U'를 표시해왔다. 나아가 신청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로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2011년에 C20 한국 대표 예술가로 선정되는 등 30년 이상 활발하게 사진관련 작품활동을 해왔으며 시사상식사전, 네이버뉴스, 네이버 전문정보검색 등에서 신청인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Bae Bien U'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준하여 UDRP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분쟁도메인 이름의 핵심요부인 'baebienu'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UDRP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신청인의 표지 'Bae Bien U'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거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ae Bien U'는 사진과 관련된 신청인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상표나 서비스표처럼 사용하여 알려진 출처

표지이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분쟁도메인의 이름을 등록할 당시에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Bae Bien U'를 사용한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Bae Bien U'는 사전에 등재된 용어도 아니며 '배병우'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기이다. 또한 분쟁도메인의 이름은 등록한지 3년이 넘었는데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개인의 웹하드로 연결될 뿐 운영중인 웹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의 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이 위 'Bae Bien U'에 상응하는 도메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판례는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의 이름인 <baebienu.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판례

이덕재

결정일: 2016년 5월 11일